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3.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3월 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88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2년 3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 가. 제안이유
 -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의 개정
에 따른 내용을 행자부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을 보
다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구세감면조례 목적 명확화(안 제1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
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등록 문화재 감면 신설(안 제7조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민창규)

동 조례안의 설치목적은 상위법과의 관계와 조례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며, 현재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하
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근대사 과정에서 형성된 건축물 등 미지
정문화재를 자치단체에서 등록 신청하여 등록 관리토록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새롭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도입됨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8
------------	-----

제안년월일 : 2002. 3. 4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의 개정
에 따른 내용을 행자부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을 보다 명
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감면조례 목적 명확화(안 제1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등록 문화재 감면 신설(안 제7조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세정 13415 - 1302(2001. 12. 12)

○세정 13400 - 796(2001. 8. 3)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를 “따라”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앞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를 삽입한다.

제7조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하고 본칙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2